



법원소재지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담당재판부	전자독촉(전자 화)3계	전화	02-530-2941
전자소송인증번호	3061326274		사용자명	임선숙	

서울중앙지방법원

## 지 급 명 령

사 건 2021차전 11147 신용카드이용대금

채 권 자 주식회사 우리카드  
서울 종로구 종로1길 50 (중학동, 더케이타워) (소관: 채권관리부)  
대표이사 김정기 지배인 손인선

채 무 자 1. 주식회사 씽크웨이브 (180111-0688284)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26, 에이동 910호(우동, 한화꿈에그린센텀)  
대표청산인 임선숙

2. 임선숙 (690420-2081618)  
서울 금천구 서부셋길 582-8, 203호(가산동, 몽삐에뜨)

청구취지와 원인 별지와 같다.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라.  
별지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채무자들은 이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21. 12. 1.

사법보좌관 김선의



정본입니다.  
2021. 12. 1.



법원주사 최병진



- ※ 1. 채무자가 이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우편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위 기간내에 법원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2.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와 별도로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독촉 안내절차서' 참조)
- 3.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채권자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도 지급명령에 조건이 붙은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이 정본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이우양

# 지 급 명 령 신 청 서

채권자 주식회사 우리카드

채무자 1. 주식회사 씽크웨이브

2. 임선숙

(소멸시효연장을위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총청구금액	18,164,897 원
소송물가액	4,638,930 원
첨용인지액	2,300 원
송 달 료	93,600 원
·비고	인



11147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지 급 명 령 신 청 서

채 권 자   주식회사 우리카드 (110111 - 5101839)  
 서울 종로구 종로1길 50(중학동,더케이트원타워)  
 대표이사 김 정 기  
 지 배 인 손 인 선  
 소관: 채권관리부(전화 02-6968-3233)

채 무 자   1. 주식회사 씽크웨이브 (180111-068828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84 한화꿈에그린센텀 에이동 910호  
 대표청산인 임선숙

2. 임선숙 (690420-20816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582-8, 203호 (가산동, 몽베에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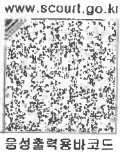
### 신 청 취 지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금 18,164,897원과 그 중 금 4,638,930원에 대하여 2021.11.26 부터 완제일까지 연28%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다음의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단 채무자 임선숙은 위 금원을 지급하되 금 3,000,000원의 한도내에서 지급하라.

독촉절차비용	금	95,900원
내역 1.인지대	금	2,300원
2.송달료	금	93,600원





###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2013.04.01 신청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사업을 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으로서 신청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여러 금융회사와의 합병 및 상호 등을 변경하였으며 현재 신용카드 등 이와 관련된 부대업무를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 아 래 -

	변경일자	주요변경내용
1	1999.01.06	(주)한국상업은행이 (주)한일은행을 합병
2	1999.01.04	(주)한국상업은행이 (주)한빛은행으로 상호변경
3	2001.12.17	(주)평화은행이 우리신용카드(주)로 상호변경
4	2002.01.31	우리신용카드(주)가 (주)한빛으로부터 신용카드업무부분 양수
5	2002.05.20	(주)한빛은행이 (주)우리은행으로 상호변경
6	2004.04.01	(주)우리은행이 우리신용카드(주)를 합병
7	2013.04.01	(주)우리은행이 신용카드사업부를 분할하여 (주)우리카드설립

2. 주채무자 주식회사 씽크웨이브는 채권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는 회원이며,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 시 신용카드 기업회원 규약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인하고 카드대금을 연체하였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며, 연체금액과 할부잔액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28%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채무자 임선숙은 주채무자가 위 신용카드를 발급할 당시 연대보증인으로 금 3,000,000원의 한도내에서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그런데 주채무자 주식회사 씽크웨이브는 채권자에게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대금 결제일에 매달 결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11.05 부터 계속 연체하여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 2211012호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들은 2021.11.25 현재까지 계속 연체하고 있으며 그 연체내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 아 래 -

조회기준일	원 금	이자 및 부채채무금	합 계
2021.11.25	금 4,638,930원	금 13,525,967원	금 18,164,897원





음성출력용바코드

4. 따라서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이 사건 채무금을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위 판결(결정)에 기한 채권은 조만간 시효가 완성될 예정이므로 그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위 신청에 이른 것이며 위 청구취지와 같은 명령을 구합니다.

###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 1. 회원연체조회표 1통.
- 1. 신용카드회원입회신청서 1통.
- 1. 신용카드회원약관 각 1통.
- 1. 판결(결정)정보 사본 1통.
-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 1. 위임장 1통.

2021. . . .

채권자 주식회사 우리카드  
 대표이사 김 정 기  
 지배인 손 인 선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이 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차전11147 신용카드이용대금

예정 기일 :

담당재판부 : 전자독촉(전자화)3계

법원주사 최병진

직통 전화 : 02-530-2941

팩 스 :

e-mail :

재판부 이메일 주소는 문의사항을 연락하기 위한 연락처이므로 재판부 이메일 주소로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제출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진행과 관련된 정보(송달과 확정내역 포함)는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나의사건검색'란에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등경매사건은 대한민국법원 경매정보홈페이지(<http://www.courtauction.go.kr>) 경매사건검색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반송처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06594

수신처  
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582-8,  
203호(가산동, 몽베에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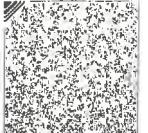
임선숙  
B3 160 70 63  
안양배 서울구로

08505

2061003-783528  
(중합민원실 전자독촉(전자화)3계)  
2021-400-11147-596

환부불필요

채무자2



## 독촉절차안내서

1. 이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7조에 따라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기재된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발령한 것입니다. 채권자가 귀하에게 청구하는 금액은 지급명령에 첨부된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취지**」란에 기재된 것과 같고, 그와 같이 청구하는 근거는 「**청구원인**」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 귀하가 이 지급명령에 따를 수 없는 경우(예컨대 돈을 빌린 사실이 없는 경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전부 내지 일부에 대한 변제,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청구 금액이 틀린 경우 등), 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예컨대 9월 2일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면 9월 16일 24:00까지)에 이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만일 위 2주의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 ※ 주요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예시(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① 일반채권 - 민법상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상 5년(상법 제64조)
- ②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 3년(민법 제163조 제6호)
- ③ 신용카드대금 등 금융거래 채권 - 5년(상법 제64조, 제46조 제8호)
- ④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민법 제766조)
- 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 10년(민법 제165조 제1항)

3. 또한 귀하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을 다투는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러한 답변서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위 30일의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내지 제257조).
4. 그 밖에 독촉절차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에 접속하거나 아래 문의처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민원센터에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고, 작성한 이의신청서를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를 통해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층 2948P

김사복관

서울지방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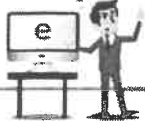
2층 개회 16915

한세원

공인종목용바코드

## [전자소송 안내]

#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전자소송하세요



### 인증서 준비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 또는 행정전자서명인증서)



### 사용자 등록

(전자소송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 회원가입)

### 전자소송동의 및 인증

지급명령 상단의 전자소송인증번호로 전자소송동의 및 인증절차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제3자가 전자소송인증번호까지 알게 될 경우 이를 이용하여 본인의 위임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소송

전자적  
제출

전자적  
송달

전자적  
열람

전자적  
납부

제증명  
전자적  
발급

#### 서류제출

소장 및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서류
- 가사 서류
- 화생·과선
- 특허 서류
- 행정 서류
- 민사진행
- 비송 과태료
- 지급 명령

#### 송달문서확인

온라인으로 송달받은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체송달문서
- 미확인송달문서

#### 나의전자소송

나의 사건기록과  
사건진행내역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나의사건현황
- 나의사건관리

- 상세한 사항은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 → '전자소송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이용·장애 문의는 사법사용자지원센터[평일 09:00~18:00, 02)3480-1715]로 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편리한 고품질 사법서비스  
**대법원 전자소송**

본 사이트에서 제공된 사건정보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특허 등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판결문이나 사건기록을 모두 인터넷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일반내용

사건진행내용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11개회16915

### 기본내용

사건번호	2011개회16915	사건명	개인회생
재판부	제54개인회생단독 (전화:02-530-2012/02-3016-3478)	접수일	2011.03.08
채무자	임O숙	회생위원	이황호
개시결정일	2011.06.07	채권이의마감일	2011.07.12
변제계획인가일	2011.09.09	면책결정일	2016.11.08
절차폐지결정일		종국결과	2016.11.08 인 용
폐기여부	기록폐기됨		

송달료,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

### 최근기일내용

일자	시각	기일구분	기일장소	결과
2011.03.21	16:00	면담기일	남관 2층 208-2호 심문실	
2011.08.09	14:00	집회기일	북관2층 제4호법정	

최근 기일 순으로 일부만 보입니다. 반드시 상세보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

일 자	내 용
2015.11.13	채권자 파신채무자(주)신라저축은행의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대리인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제출
2016.05.17	채권자 (주)온누리에스엔씨대부 채권자 주소 변경 신청서 제출
2016.08.04	채권자 와이엔케이파트너스대부(주)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제출

일 자	내 용
2016.10.27	채무자 임O숙 개인회생면책신청 제출

최근 제출서류 순으로 일부만 보입니다. 반드시 상세보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내용**

구 분	이 름	종국결과
채권자	채권번호1. (주)한국씨티은행	
채권자	채권번호2. (주)국민은행	
채권자	채권번호3. (주)우리은행 	
채권자	채권번호3-1.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자	채권번호4. 아프로캐피탈(주)(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	
채권자	채권번호5. (주)현대스위스저축은행	
채권자	채권번호6. 신라상호저축은행	
채권자	채권번호7. 와이케이대부(주)(산와대부(주))	
채권자	채권번호8. 부산신용보증재단	
채권자	채권번호9. 삼성카드(주)	
채권자	채권번호10. 신한카드(주)	
채권자	채권번호5-1. (주)와이엔디파트너스대부	
채권자	채권번호1-1. (주)온누리에스엔씨대부	
채권자	채권번호9-1. 와이엔케이파트너스대부(주)(피아이에이엔피엘4차대부(유))	
채무자	1. 임O숙	인용

채권자 우리카드(주) 채권자 케라현은신리 제출  
 한국신용보증재단 - 면책결정요청 함께